

# 개인병원의 의료법인전환에 따른 절차와 세제상 문제<下>

정 기 선  
〈현대병원경영연구소 소장〉

## 5. 의료법인전환시 유의사항

### 1) 출연자의 의료인 여부<sup>3)</sup>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출연자가 의료인인가의 여부이다. 현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동시행령 제2조의 2등의 조항을 검토해 보면 비의료인이 출연하고 이사가 된 경우에는 출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법인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비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직에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단, 이사가 아닌 감사나 행정원장 등은 무방한 것으로 판단됨).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직을 맡아도 무방하다. 단, 이사장등과 특수관계자 관계에 있고, 특수관계인 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수의 1/3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1986. 12. 31의 개정전에는 특수관계인 이사의 수가

전체이사수의 1/3이하로 되어 있어서 전체 이사수가 6명일 경우 이사장인 남편과 이사인 부인이 함께 이사로 있을 경우에는 증여세의 대상이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전체 이사수가 6명일 경우 특수관계자가 2명이어도 무방하고, 3명 이상일 경우만 증여세가 해당된다. 증여세와 관련된 예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관계예규〉

〈문〉: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상속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① 의료법인의 이사중 비출연자의 의료인이 있는 경우

② 의료법인의 이사중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비의료인이 있는 경우

〈답〉: (직세 1234-2396 1975. 11. 4)

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의료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자가 이사인 경우라도 그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의료법인

주 : 3) 정기선, 전계서, pp.528~530.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의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가. 비의료인인 출연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나. 출연자(의료인인 출연자도 포함)의 친족이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주 : 따라서 위의 질의의 경우에는 공의사업에 해당됨.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세액이 25,000,000원, 2억원인 경우 세액이 60,000,000이며,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 60%라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사진의 구성에 따른 몇가지 사례에 대하여 증여세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이사가 모두 3명(의사인 아버지, 의사인 아들 및 간호사인 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이사 3명이 모두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의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 3명은 적은 돈이라도 출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억원, 아들과 딸은 각각 1백 만원씩 출연한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 법의 당초 취지는 의료법인과 같은 공의법인은 자본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며, 의술이라는 무형의 자본이 가미되어야만 된다는 취지에서 의료인의 경우에는 출연을 하고 이사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의료인이라도 출연을 하고 이사가 되어야만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앞의 예에서 아버지만 출연을 하고 아들과 딸이 하나도 출연하지 않고 이사가 되었으면 특수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은 돈이라도 출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례 2〉

비의료인인 남편이 출연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이사장과 이사를 맡을 경우

이 경우는 비의료인이 출연을 하고 이사가 되었으므로 남편이 출연한 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남편은 출연을 하되 경영 원장이나 감사의 직책을 갖고, 한푼도 출연하지 아니한 아내로 하여금 이사장직을 맡도록 하여야 증여세가 해당되지 아니한다.

#### 〈사례 3〉

의료인인 아버지가 100% 출연을 하고 의료인인 아들이나 딸이 출연을 하지 않고 이사가 된 경우

앞의 〈사례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들이나 딸도 약간 출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사례 4〉

의료인인 아버지가 100% 출연을 하고 비의료인의 아내와 아들이 이사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전체 이사수에 따라서 증여세의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이사장인 아버지와 아내 및 아들 3명이 전체 이사수의 1/3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 이사수는 9명으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8명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 2) 기본재산의 평가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경우나 새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이나 공인감정사 또는 은행으로부터 감정을 받고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료가 많이 나간다고 하여 가능한 한 감정가격이 적게 되도록 해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대로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첫째, 토지의 경우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예외이나 건물등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클수록 나중에 감가상각을 통하여 많은 비용을 계상할 수 있어서 절세가 된다.

둘째, 토지와 건물가격이 높게 평가되면 대차대조표에는 그만큼 자산과 기본재산(출연금)이 높게 계상되므로 병원의 재무구조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병

원에 비하여 유리하다.

### 3) 자산과 부채의 포괄양수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새로 설립된 의료법인이 개인병원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지와 건물이 기본재산으로 감정평가되어 출연되었다면 이들 자산 이외의 모든 자산, 예를 들면 의료장비,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의료미수금, 재고자산, 현금예금 등은 의료법인에서 인수하고, 동시에 은행차입금, 외상매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부채도 인수하게 된다. 이 경우에 자산과 부채는 일반적으로 개인병원의 의료장비 등을 감정하여 감정된 가격으로 인수하겠다면 그렇게 인수할 수도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인병원에서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모두 지불할 수 있고, 법인병원에서 그대로 인수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기본 재산 이외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가 생기게 된다.

#### (1) 인수자산이 인수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인수자산은 50억원, 인수부채는 40억원이라면 10억원만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출연금외에 추가출연금이 된다. 앞에서 30억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한 병원의 법인전환후의 대차대조표는 아래와 같이 된다.

자 산	부채 및 출연금
유동자산	부 채 40억원
80억원	출연금 40억원

#### (2) 인수부채가 인수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인수자산은 40억원, 인수부채는 50억원이라면 10억원만큼의 차액은 출연금에서 차감되게 된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 등으로 30억원을 출연한 경우 출연금액은 2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인수 자산보다 인수부채가 많을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마이너스되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보사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부실법인을 인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4)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 세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공익법인)는 아래의 보고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세무조정을 받는 병원의 경우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 각 사업년도의 결산서

다만 최초의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새로 개시할 경우에는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미 사업을 개시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연재산명세서

- 출연재산 사용계획서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가산세액=미제출 또는 누락시킨 재산가액×해당 상속세율×1%

이 가산세는 100병상정도의 의료법인이면 1천만원 정도나 되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억울한 가산세를 내게 된다. 신고시 사용되는 보고서식은 <표 3>~<표 5>와 같다.

## 6. 맺는 말

필자는 지금까지 의료법인으로서의 전환여부를 검토해본 여러 개인병원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자문해준 바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디에서 자문을 받았는지 잘못알고 있는 병원장이 의외로 많았다. 의료법인이 되려면 막대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분, 토지와 건물을 빼고 출연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 건물 등의 감정시 가능하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 의료법인이 되면 정부의 간섭이 심하다는 분 등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다.

돌팔이의사 10명으로부터 진찰을 받는 것보다 고명한 의사 1명으로부터 진찰을 받는 것이 병명을 알아내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자문과 같은 것도 그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만 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때에는

출연재산명세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공의사업명(법인명)				
	⑤ 성명				
출연자	⑥ 주소				
	⑦ 출연년월일				
	⑧ 출연목적				
	⑨ 출연방법				
출연재산명세서					
⑩ 재산의 소재지	⑪ 종류	⑫ 수량	⑬ 단가	⑭ 규격	⑮ 적요
19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인
					수수료
					없음
<b>※ 기재상 주의</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자가 1인이상일 때에는 출연자별로 작성할 것.</li> <li>가액은 출연당시의 시가 또는 상속세법에 의한 가액을 기록할 것.</li> <li>신청인은 출연받은 자를 기록하되 출연받은 자가 불분명하여 상속인 또는 상속 재산관리인을 기재할 때는 그 사유를 별지에 상세히 기록할 것.</li> </ol>					

최상급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왜냐하면 최상급 전문가로부터는 그 이하의 전문가보다 금전적인 보수차이의 몇배에 이르는 지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분야의 문외한으로부터는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틀리게 자문을 받아서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유

념해야 한다.

필자는 1976년경에 미국인과 연계된 회계사무실에 1년 반 근무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무문제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후 잘 알았다고 인사나 하고 가거나, 점심이나 저녁대접을 하여 자문료에 대신하려는 사람이 많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병원계에는

출연재산사용계획서					처리기간 즉시
①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공의사업명 또는 법인명		⑤ 사업년도			
사업년도					
⑥ 재산의 종류	⑦ 수량 또는 금액	⑧ 사업명 (용도)	⑨ 세부 사업	⑩ 사용 기한	⑪ 비고
19 년 월 일					
제출자 인 세무서장 귀하					
※ 기재상 주의 1. 사용계획은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2. ⑥에는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 순으로 기재하고 비교에 상세히 기록할 것.					
					수수료 없음

만연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사람들은 구두자문을 받고 가면 며칠후에 자문내용을 다시 문서로 보내어 문의하고 문서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4면 내지 6면의 타자된 답변서를 보내고 그 당시 1,000~1,500불을 청구하곤 했었다. 이들이 이처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은 우리 공인회계사들이 자문해준 내용이 틀려서 자기회사가 손실을 볼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들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문서화하는 관행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관행을 깨뜨려야만 한다. 더구나 의료법인으로의 전환과 같이 몇십억원이 관련된 의사결정을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의학상

출연재산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공익사업명 또는 법인명			⑤ 사업년도			
진 도						
⑥ 사업명 또는 용도	⑦ 세부 사업	⑧ 사용량 또는 금액	⑨ 기간 또는 완료일자	진도		⑫ 비고
				⑩ 목표	⑪ %	
19 년 월 일						
제출자 인						
세무서장 귀하						
<b>* 기재상 주의</b> 1. 본 표는 사용계획상의 사용계획순위로 작성할 것 2. 진도를 설명할 수 있는 재증명은 별첨할 것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답을 하는 분들을 보면 상담끝에 「자세한 것은 전문의를 찾아서 자세히 진찰을 받으십시오」하고 말하는 것을 보는데 경영문제에 관하여는 경영전문가의 자문

을 잘 받지 않으려는 것을 보면 잘 이해가 안된다. 이 글이 의료법인의 설립이나 전환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